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2.6.10.) 후 시행('22.12.11.) 예정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과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
(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및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및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및 협조 요청

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및 협조 요청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7조(권한의 위임)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u> <u>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u> <u>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실</u> <u>시 및 협조 요청</u>
② 해양수산부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 임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u> <u>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u> <u>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실</u> <u>시 및 협조 요청</u>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1797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연 락 처	(044) 200 - 5471